

서 면 질 문 답 변 서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의원	고응종 의원
질문대상자	평창군수(건설과장)	답변일자	2002년 12월 6일
<p>질문요지</p> <p>○ 건설기계 대여업 및 주기장 현황</p> <p>답변내용</p> <p>○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①항 4에 의거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 하여야 하며,</p> <p>○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영 제13조.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한 자는 우리군에 5개소 (일반2, 개별3)이며, 대여업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는 모두 32대이고, 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p> <p>붙임 : 1. 건설기계 대여업 및 주기장 현황 1부. 2. 관련법 사본 1부. 끝.</p>			

건설기계대여업 및 주기장 현황

일련 번호	건설기계 대여업 (구분)	건 설 기계명	등록번호	소속대여회사 및 사용본거지		주기장위치 (등록면적)
				대여회사	사용본거지	
합계						
1	일반	불도우저	강원01고5012	용평건기(주)	용평면 장평리 368-4	용평면 장평리 667-6 (320㎡)
2		굴삭기	강원02고6002			
3			강원02고6011			
4			강원02고6013			
5			강원02고6311			
6			강원02고6963			
7			강원02다5360			
8			덤프트럭			
9		강원06고5878				
10		강원06고5930				
11		강원06고6081				
12		강원06고6165				
13		강원06고6254				
14		강원06고6362				
15		강원06고6545				
16		콘크리트 펌프				
17	굴삭기	강원02고5220		(주)진흥중기	대화면 대화리 1956-3	평창읍 약수리 64-2 (800㎡)
18		강원02고6539				
19		강원02고6889				
20		강원02고6934				
21		강원02고7034				
22		강원02나5746				
23		강원02다5754				
24		지게차	강원04고5115			
25			강원06나5530			
26		로울러	강원09나5507			
27		공기압축기	강원21고5003			
28	천공기	강원22고5003				
29	개별	굴삭기	강원02고6484	정금옥	미탄면 창리 182 (96㎡)	
30		덤프트럭	강원06고5003	권은구	진부면 하진부리 668-2 (60㎡)	
31	개별	덤프트럭	강원06다5200	유상근	진부면 하진부리 661-2	진부면 하진부리 661-2 (129㎡)
32			강원06다5489			

※ 주기장은 1대당 24㎡

② 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16]

第20條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의 사후관리) ①第1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 型式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에 대하여 建設交通部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의 整備에 필요한 部品の 공급과 整備 및 檢査를 위한 技術 또는 教育資料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28>

②製作者등은 建設交通部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施設 및 技術人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技術人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1.1.16>

③建設交通部長官은 製作者등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第5章 建設機械事業

第21條 (建設機械事業의 申告등) ①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大統領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補充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廢止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절차, 申告證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第22條 삭제<1999.12.28>

第23條 삭제<1999.12.28>

第24條 (建設機械事業者의 變更申告등의 義務<개정 1999.12.28>)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事業者"라 한다)는 申告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開始·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 建設交通部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12.28>

第24條의2 (建設機械의 보관·관리비용의 徵收) 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가 整備가 완료된 후 長期間 建設機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로부터 建設機械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받을 수 있다.

[보조시선 1999.1.29]

야 한다. <개정 1999.9.9>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16조 삭제 <2000.6.27>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계약
3. 분담금·공제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지급준비금·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7>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7>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월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 및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1994.11.5>

②제1항의 경우 12개월의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1.5>

③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 (사후관리시 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4.7, 2001.8.4>

1. 삭제<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19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정 2000.7.24>)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각각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및 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4.7>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법(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으로 본다.<개정 1997.4.7, 2001.8.4>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9.6>

1. 삭제<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1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

한 한글로

건설기계대여업의신고기준 [제59조관련]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1999.10.19, 2001.8.4>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제59조관련)

구 분	일 반	개 별
1. 건설기계대수	5대 이상 (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 음
3.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0.815 24㎡ × (건설기계대수)	

- 비 고 :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무한계도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